



# 뉴욕 재개



## 고용주 및 피고용인을 위한 부동산 지침

본 지침은 2단계 **재개** 허용된 뉴욕주 지역의 모든 부동산 활동뿐 아니라 이전에 필수적인 것으로 허용된 주 전체의 부동산 활동에도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활동에 대한 코로나19 중간 지침(Interim COVID-19 Guidance for Real Estate Activities)을 참조하십시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 모든 주거용 부동산 관리 단체, 부동산 영업사원(브로커, 건물 접수원, 건물 감평사, 연관 기업/운영자는 부동산 부문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 주, 연방의 법, 규정,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필수	권장 모범 사례
물리적 거리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영업 사원, 근로자, 하청업자 및 공급업자 등) 및 고객의 총 인원이 점유 인증서에 명시된 특정 지역에 대한 최대 수용 인원의 50 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li> <li>✓ 핵심 활동에 더욱 짧은 거리가 필요한 경우(청소, 유지 보수, 평가 측정, 단위 접수)를 제외하고 항상 모든 사람이 최소 6피트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li> <li>✓ 언제나 영업 사원, 근로자, 하청업자 및 공급업자가 타인과 6피트 이내의 거리에 있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리는 허용 가능한 페이스 커버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다른 사람이 예기치 않게 6 피트 이내로 들어오는 경우 반드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li> <li>✓ 비필수 대면 모임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제한합니다.</li> <li>✓ 천 소재, 일회용, 기타 직접 만든 페이스 커버는 작업 특성상 일반적으로 개인 보호 장비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근무지에서 사용을 제한해 주십시오</li> <li>✓ 사람(근로자 및/또는 주민)이 모든 방향(옆에 있거나 마주보는 등)에서 적어도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좌석(테라스와 정원 등 야외 공용 공간)을 변경합니다.</li> <li>✓ 필수적이지 않은 공용 구역(오락실 등)을 폐쇄합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 6피트 거리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거주자와 고객에게 공용 공간(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아파트 등)에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해야 함을 알립니다.</li> <li>✓ 사람들이 모든 방향(좌우 및 서로 마주할 경우)에서 최소 6 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 떨어져 있고 사용 사이에 청소 및 소독 없이 근무 스테이션을 공유하지 않도록 근무 스테이션 및 직원 좌석 구역의 수를 제한/변경합니다.</li> <li>✓ 엘리베이터 대기 구역에서의 인구 밀집을 방지하고 엘리베이터의 밀집도를 제한하기 위해 계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li> <li>✓ OSHA 지침에 따른 물리적 장벽(스트립 커튼, 칸막이 벽, 플렉시 유리 등)의 설치를 고려하십시오.</li> <li>✓ 모든 모든 실내 또는 실외 공용 좌석 공간을 폐쇄합니다.</li> <li>✓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개인이 좁은 공간(엘리베이터, 직원 공간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단, 모든 개인이 허용 가능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li> <li>✓ 좁은 통로, 복도 등 일반적으로 줄이 형성되거나 사람들이 집합할 수 있는 모든 공용 공간(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로비, 출/퇴근 스테이션, 건강 검진 스테이션 등)에서 6 피트의 거리를 화살표가 표시된 테이프 또는 표지판을 사용하여 양방향 이동 흐름을 완화합니다.</li> <li>✓ 가능한 경우 화상 또는 원격 회의 등 CDC 지침에 따라 "기업 및 고용주를 위한 2019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계획 및 대응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Businesses and Employers to Plan and Respond to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에 따라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li> </ul>

STAY HOME.

STOP THE SPREAD.

SAVE LIVES.



# 뉴욕 재개

## 고용주 및 피고용인을 위한 부동산 지침

본 지침은 2단계 **재개**가 허용된 뉴욕주 지역의 모든 부동산 활동뿐 아니라 이전에 필수적인 것으로 허용된 주 전체의 부동산 활동에도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활동에 대한 코로나19 중간 지침(Interim COVID-19 Guidance for Real Estate Activities)을 참조하십시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 모든 주거용 부동산 관리 단체, 부동산 영업사원(브로커, 건물 검수원, 건물 감평사, 연관 기업/운영자는 부동산 부문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 주, 연방의 법, 규정,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필수	권장 모범 사례
물리적 거리두기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및 휴게실과 같은 좁은 구역에서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그러한 구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없을 경우 점유율을 제한하기 위해 표지와 시스템(공간 사용 시 해당 내용 표시)을 개발해야 합니다.</li> <li>✓ 다양한 방법(근무 시간 조정, 필수 인력으로 출근 제한, 시프트 조정, 현장 인력 감축, 일정 교대로 설정, 세그먼트 및 배치 활동 등)을 통해 대면 접촉 및 모임을 완화합니다.</li> <li>✓ 픽업 및 배달을 위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능한 한 접촉을 제한합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영상 회의 또는 화상 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통풍이 잘되는 열린 공간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각자 서로 6 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의자가 있는 경우, 의자 사이에 공간을 두고 근로자가 교대로 의자에 앉게 하는 등).</li> <li>✓ 모든 모임(휴식, 식사, 근무 시프트 시작/종료 등)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6 피트 공간 등)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근무 스케줄을 교대로 설정해야 합니다.</li> <li>✓ 비필수 방문객의 현장 출입을 금지합니다.</li> <li>✓ 현장 접촉(시프트를 마치고 떠나는 사람의 퇴로 및 시프트를 시작하는 사람의 출로를 지정하는 등) 및 이동(사람들이 가능한 한 자주 워크스테이션 근처에 있도록 하는 등)을 제한해야 합니다.</li> </ul>
보호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료로 허용 가능한 페이스 커버를 직원/하청업자에게 제공하고 교체용 커버를 적절히 제공해야 합니다.</li> <li>✓ 허용되는 페이스 커버에는 천(수제 봉제, 임시 가리개, 두건 등), 수술용 마스크, 페이스 쉴드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li> <li>✓ 페이스 커버를 세탁, 교체 및 공유하지 마십시오. 천 안전 가리개 및 기타 유형의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에 대한 추가 정보와 사용 및 청소 지침은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a href="#">지침</a>을 참조하십시오.</li> <li>✓ 근로자에게 PPE를 착용, 탈착, 세척(해당되는 경우), 폐기 방법에 대해 교육합니다(만약 빌딩 관리자/소유자가 하청업자에게 PPE를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교육은 하청업자에게도 실시해야 함).</li> <li>✓ 엘리베이터, 로비, 사무실 주변 이동 등 공용 공간에서 근로자와 방문자가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도록 권고합니다.</li> </ul>	



# 뉴욕 재개

## 고용주 및 피고용인을 위한 부동산 지침

본 지침은 2단계 **재개**가 허용된 뉴욕주 지역의 모든 부동산 활동뿐 아니라 이전에 필수적인 것으로 허용된 주 전체의 부동산 활동에도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활동에 대한 코로나19 중간 지침(Interim COVID-19 Guidance for Real Estate Activities)을 참조하십시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 모든 주거용 부동산 관리 단체, 부동산 영업사원(브로커, 건물 접수원, 건물 감평가, 연관 기업/운영자는 부동산 부문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 주, 연방의 법, 규정,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필수	권장 모범 사례
보호 장비(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구, 랩톱, 노트북, 전화, 터치스크린, 식기 사용 등 장비의 공유뿐만 아니라 공유 표면을 만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는 직원이 공유 물건 및 자주 만지는 표면과 접촉할 때 장갑을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직원이 접촉 전후에 손 위생 절차를 실시하도록 씻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li> </ul>	
주거 부동산의 직접 방문 및 관련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자가 없거나 비어있는 부동산만 방문할 수 있습니다(현재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부동산 내에 없는 경우 등).</li> <li>✓ 부동산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페이스 커버를 착용해야 합니다.</li> <li>✓ 매번 방문할 때마다 장갑을 교체하거나 세척하고 소독합니다(해당되는 경우).</li> <li>✓ 매번 방문 전후 접촉이 잦은 표면(손잡이, 문 손잡이 등)을 청소하고 소독합니다.</li> <li>✓ 부동산 내부 및 외부에서 사람의 밀집을 피하기 위해 방문 일정을 교대로 조정합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페이스 커버 외에도 장갑과 신발 커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li> <li>✓ 필요한 경우 잠재적 세입자 및/또는 구매자에게 페이스 커버와 장갑을 제공합니다.</li> <li>✓ 판매자/임차인은 외부 당사자가 표면을 최소로 접촉하도록 모든 문과 캐비닛을 열고 모든 조명 스위치를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li> <li>✓ 잠재적 임차인/구매자에게 해당 물건을 방문할 동안 필수적으로 접촉해야 하는 표면(만약 올라가고/내려가는 계단의 손잡이 등)만을 만지도록 안내합니다.</li> <li>✓ 직접 대면하여 건물의 공용 편의시설(체육관, 루프덱, 수영장 등)을 방문하는 것을 제한합니다.</li> <li>✓ 한 번에 한 명의 당사자(건물 검사관, 주택 감평가, 잠재 세입자/구매자, 사진 작가, 스테거 등)만이 부동산 내부로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장려하십시오. 한 명 이상의 당사자가 동시에 물건에 있는 경우, 개인 간 항상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하고 페이스 커버를 착용해야 합니다.</li> <li>✓ 임차인/구매자 후보는 가능한 경우 어린이를 부동산 방문 시 데려오지 않거나 동행한 어린이가 외부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li> <li>✓ 잠재적 세입자/구매자가 영업사원(브로커와 같은 차를 이용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만약 그럴 수 없는 경우, 차량에 탑승한 모든 사람이 페이스 커버를 착용해야 하며, 차량에서 접촉이 잦은 부분은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li> <li>✓ 대면 설명보다 원격 설명(녹화/라이브 비디오 등)을 진행합니다.</li> </ul>

STAY HOME.

STOP THE SPREAD.

SAVE LIVES.



# 뉴욕 재개



## 고용주 및 피고용인을 위한 부동산 지침

본 지침은 2단계 **재개** 허용된 뉴욕주 지역의 모든 부동산 활동뿐만 아니라 이전에 필수적인 것으로 허용된 주 전체의 부동산 활동에도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활동에 대한 코로나19 중간 지침(Interim COVID-19 Guidance for Real Estate Activities)을 참조하십시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 모든 주거용 부동산 관리 단체, 부동산 영업사원(브로커, 건물 검수원, 건물 감평사, 연관 기업/운영자는 부동산 부문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 주, 연방의 법, 규정,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필수	권장 모범 사례
위생, 청소 및 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 및 보건부(DOH)의 위생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날짜, 시간, 소독 및 청소 범위를 기록한 청소 일지를 현장에 유지하십시오.</li> <li>✓ 비누, 따뜻한 물 및 일회용 종이 타올로 손을 씻는 것 또는 손 씻기가 가능하지 않거나 실용적이지 않은 곳에서는 알코올을 60 퍼센트 이상 함유한 알코올 기반 손소독제를 포함하여 사무실에 손 위생 스테이션을 제공 및 유지합니다.</li> <li>✓ 참가자가 자주 접촉하는 공유 표면을 사용하기 전후에 청소 및 소독 용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그 후 손 위생 조치를 수행하도록 합니다.</li> <li>✓ 인증 소독제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장비 및 도구를 청소 및 소독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는 최소한 근무자 교체 또는 새로운 도구 사용 시 청소 및 소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li> <li>✓ 공유 물품 및 자주 접촉하는 표면에 적합한 청소 및 소독 용품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표면을 사용하기 전후에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직원이 이러한 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합니다.</li> <li>✓ 많은 개인이 사용하는 고위험 지역 및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더욱 자주 청소 및 소독하고, 현장을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합니다.</li> <li>✓ 엄격한 청소 및 소독은 적어도 각 교대 후 매일 또는 필요에 따라 더 자주 실시해야 합니다.</li> <li>✓ 가능한 경우 수용 인원을 줄임으로써 화장실에서 거리두기 규칙을 준수하도록 합니다.</li> <li>✓ 많은 개인이 사용하는 고위험 지역(화장실 등) 및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더욱 자주 청소 및 소독하고, 장소 또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합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영업사원이 부동산 방문 전후에 잠재적 고객에게 손 소독제를 제공하도록 합니다.</li> <li>✓ 출구와 입구를 포함한 접촉이 잦은 구역에 터치리스 손 소독제 디스펜서를 설치합니다.</li> </ul>

STAY HOME.

STOP THE SPREAD.

SAVE LIVES.



# 뉴욕 재개



## 고용주 및 피고용인을 위한 부동산 지침

본 지침은 2단계 **재개**가 허용된 뉴욕주 지역의 모든 부동산 활동뿐만 아니라 이전에 필수적인 것으로 허용된 주 전체의 부동산 활동에도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활동에 대한 코로나19 중간 지침(Interim COVID-19 Guidance for Real Estate Activities)을 참조하십시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 모든 주거용 부동산 관리 단체, 부동산 영업사원(브로커, 건물 검수원, 건물 감평사, 연관 기업/운영자는 부동산 부문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 주, 연방의 법, 규정,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필수	권장 모범 사례
위생, 청소, 및 소독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노출된 구역의 청소 및 소독을 진행해야 하며, 이러한 청소 및 소독은 최소한 모든 수송 구역을 포함한 자주 접촉하는 표면(엘리베이터, 대기실, 출입구, 배지 스캐너, 화장실 손잡이, 문 손잡이 등)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때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코로나19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b>제품</b>을 사용합니다.</li> <li>✓ 아픈 근로자가 건물의 공용 공간을 이용한 경우 해당 공용 공간(엘리베이터, 로비, 입구 등)을 폐쇄하고 소독합니다.</li> <li>✓ 일반적으로 거주자 및/또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공용, 커피 포트 또는 기타 식음료의 음용을 금지합니다.</li> <li>✓ 음식과 음료의 공유(뷔페 스타일 식사 등)를 금지하고 집에서 점심을 가져 오도록 권장하며 식사를 하면서 사교적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합니다.</li> </ul>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정부가 지정한 업계 지침을 검토하고 이해했으며 이를 이행할 것임을 보증해야 합니다.</li> <li>✓ 적절한 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 개인 보호 장비의 적절한 사용,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준수하도록 직원 및 고객에게 상기시키도록 사무실 내부 및 외부에 표지판을 게시하십시오.</li> <li>✓ 직원 및 고객을 위해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적용 가능한 지침 표지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일관된 수단이 포함됩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웹 페이지, 문자 및 이메일 그룹,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개발하여 직원, 고객, 방문자에게 지침, 교육, 표지, 정보 등이 포함된 업데이트 정보를 제공합니다.</li> <li>✓ 구두 의사소통 및 표지 등을 통해 PPE 사용, 특히 페이스 커버 사용에 대한 CDC, 주 및 지방 보건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장합니다.</li> <li>✓ 적절한 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 개인 보호 장비의 적절한 사용,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준수하도록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도록 건물 전체에 표지판을 게시하십시오.</li> </ul>

STAY HOME.

STOP THE SPREAD.

SAVE LIVES.



# 뉴욕 재개

## 고용주 및 피고용인을 위한 부동산 지침

본 지침은 2단계 **재개** 허용된 뉴욕주 지역의 모든 부동산 활동뿐 아니라 이전에 필수적인 것으로 허용된 주 전체의 부동산 활동에도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활동에 대한 코로나19 중간 지침(Interim COVID-19 Guidance for Real Estate Activities)을 참조하십시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 모든 주거용 부동산 관리 단체, 부동산 영업사원(브로커, 건물 검수원, 건물 감평가, 연관 기업/운영자는 부동산 부문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 주, 연방의 법, 규정,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필수	권장 모범 사례
의사소통(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그 결과를 즉시 주 및 지역 보건부에 알려야 합니다.</li> <li>✓ 현장에 완성된 안전 계획을 눈에 띄게 게시합니다.</li> </ul>	
선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픈 직원은 직장에서 병에 걸렸다면 자택으로 돌아가 자택에 머물러야 합니다.</li> <li>✓ 직원을 대상으로 필수 건강 선별 검사(설문지, 체온 검사 등)를 진행하며, (1) 지난 14일간의 코로나19 <b>증상</b>, (2) 지난 14일간 코로나19 검사 양성 결과 및/또는 (3) 지난 14일간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자와 근접 또는 밀접한 접촉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li> <li>✓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입장할 수 없으며 진단 및 검사를 받기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는 지침을 받고 자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li> <li>✓ 확진 사례를 즉시 주 및 지역 보건부에 즉시 통보하고 해당자에게 의료 및 테스트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li> <li>✓ 양성 사례를 대비해 청소, 소독 및 접촉 추적 계획을 세우십시오.</li> <li>✓ 반드시 이러한 선별 프로세스에서 수집한 모든 응답을 매일 검토하고 해당 검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반드시 설문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나중에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개인의 보고를 받을 당사자를 임명해야 합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이 코로나19 양성 판정 및/또는 증상이 있는 경우 다른 주민과 공유하도록 권고합니다.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부동산 소유주/소유자는 적절한 청소 및 소독 프로토콜을 시행해야 합니다.</li> <li>✓ 부동산 방문의 경우, 입장 전 구매자/임차인/판매자/임대인에게 선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li> <li>✓ 최종 방문 48시간 내에 코로나19 확진자 및/또는 유증상자의 경우 구매자/임차인/판매자/임대인은 해당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li> <li>✓ 고용 기회 균등 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또는 DOH 지침에 따라 일일 체온 검사를 고려합니다.</li> <li>✓ 코로나19와 관련된 증상의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CDC의 "<b>코로나바이러스 증상(Symptoms of Coronavirus)</b>" 지침을 참조하십시오.</li> <li>✓ 근로자와 방문자를 포함하여, 근무 현장 또는 구역에서 타인과 근접 또는 밀접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의 기록을 보관하여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모든 접촉자를 확인 및 추적하고 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li> <li>✓ 선별자는 CDC, DOH 및 OSHA 프로토콜을 숙지한 사람이 진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최소한 페이스 커버를 포함하여 적절한 PPE를 착용해야 합니다.</li> <li>✓ 코로나19 의심자 또는 확진자, 코로나19 확진자 직원과 근접 또는 밀접 접촉을 한 후에 직장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경우 프로토콜과 정책에 대해서는 DOH <b>지침</b>을 참조하십시오.</li> </ul>

STAY HOME.

STOP THE SPREAD.

SAVE LIVES.